

# 국제 ODA 동향

(2008. 5)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 ODA 토픽

[Page]

- [2007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2]
  - ◆ OECD에 통보된 2007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무역관련 원조에 관한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
- [개도국에서의 로컬 구매 촉진](#) [14]
  - ◆ 개도국에서의 로컬 구매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 및 DAC 회원국의 원조관련 구매제도 현황 정리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요건 및 절차의 개정 추이](#) [27]
  - ◆ 우리나라의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DAC 가입요건 및 절차의 개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정 방향등을 전망

## ODA 단신

-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 3차 고위급 회담 의제 정리](#) [40]
  - ◆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 이행 보고서, Roundtable 토의 등을 통해 작성된 원조 효과성에 대한 평가 자료 요약
- [New JICA 출범](#) [43]
  - ◆ 2008년 10월 발족할 New JICA의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을 소개하고 시사점 제시

## ODA 자료

- [2007년 ODA 통계\(잠정치\)의 주요 내용](#) [46]
  - ◆ 2008년 4월 OECD DAC가 발표한 ODA 통계(우리나라 포함)
-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와 현황](#) [51]
  - ◆ 별도의 원조 전담 부처를 운영중인 독일의 원조체계와 현황에 대한 조사

## EDCF 소식

- [2008년 1/4분기 EDCF 소식](#) [62]
  - ◆ 2008년 1/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2008년 3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ODA 토크 1

## 2007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 【요약】

-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참가국의 2007년도 원조사업 통보 결과를 보면,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23.7% 증가한 47억 SDR을 기록(이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4억 SDR을 차지)
  -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51억 SDR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의해 사전통보된 2007년도 언타이드 원조 신용은 총 116건, 85억 SDR으로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

### I.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consensus notification)

#### 1. 수출신용협약의 개요

##### □ 수출신용협약의 의의

- '수출신용협약(Agre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공적 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가 초래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1978년 4월 참가국 합의하에 제정되었음
  - 동 협약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 타이드 원조에 관한 규정, 통보 및 협의 절차, 부문별 양해<sup>1)</sup> 등으로 구성

##### □ 통보 대상

- 수출신용협약의 통보 대상이 되는 원조는 무역과 관련된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임
  - 타이드 원조는 지원금액 및 양허성 수준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통보 대상이 되며, 언타이드 원조는 사전통보 대상에만 해당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1) 선박·핵발전소·민간항공기·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프로젝트 등 특정부문에 대한 양해(sector understanding)로서 수출신용협약의 첨부자료를 구성

## 2. 통보 내용

### 가. 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 2007년에 통보된 타이드 원조는 전년에 비해 증가
  -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23.7% 증가한 47억 SDR, 통보건수는 14.3% 증가한 255건을 기록
    - 양허성 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8억 SDR)와 Helsinki-type 타이드원조<sup>2)</sup>(34억 SDR)이 모두 증가했음
  - 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36억 SDR(2004년) → 52억 SDR(2005년) → 38억 SDR(2006년) → 47억 SDR(2007년)
- 통보된 타이드 원조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sup>2)</sup>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4억 SDR을 차지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9% 감소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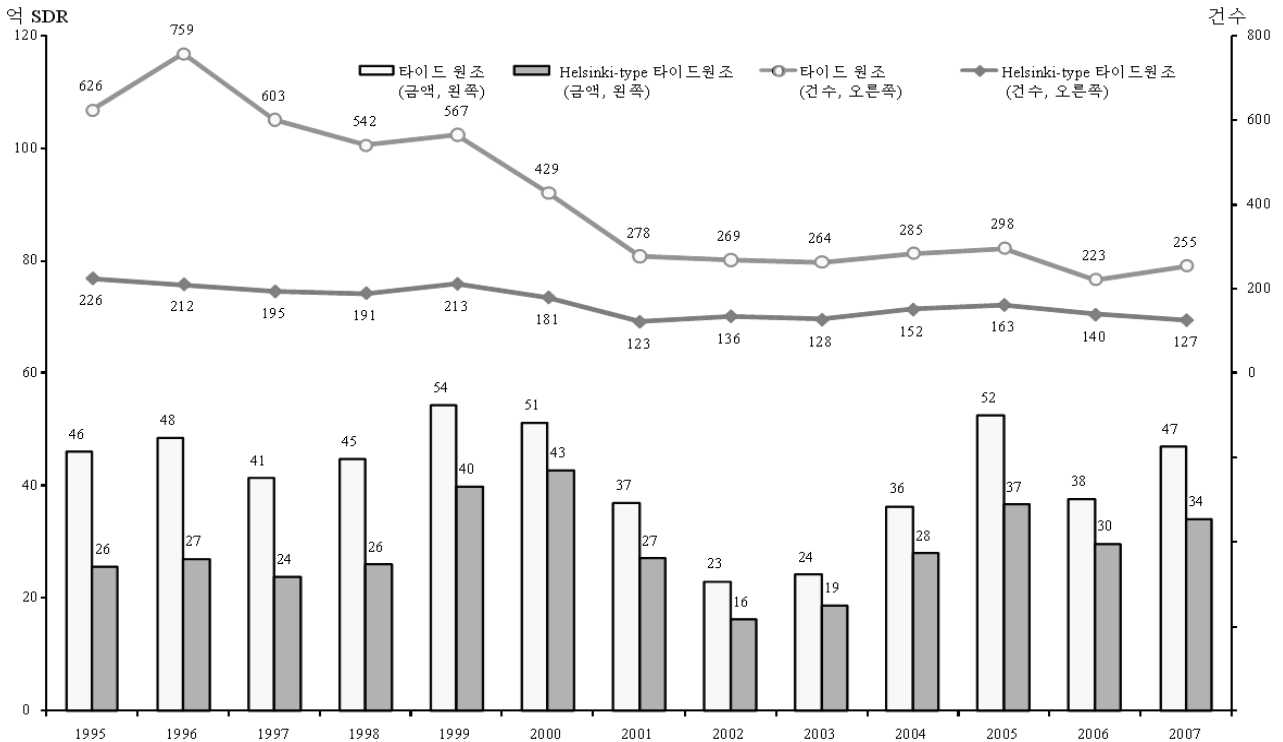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SDR)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누 계*
통보대상 원조(all aid)	10,747	9,185	9,846	n.a.
- 언타이드 원조	5,502	5,426	5,106	n.a.
<b>= 타이드 원조(tied aid)</b>	<b>5,246</b>	<b>3,760</b>	<b>4,740</b>	<b>66,083</b>
- 소액 타이드 원조(2백만 SDR 미만)	78	50	63	2,826
- 최빈국에 대한 타이드 원조	115	292	456	5,457
- 양허성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1,386	452	809	12,466
<b>=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b>	<b>3,667</b>	<b>2,967</b>	<b>3,413</b>	<b>45,335</b>

\* 1992. 3. ~ 2007. 12

2) 상업성이 있는 사업과 고소득국가에 대한 타이드 원조 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92년에 도입된 Helsinki package의 규제대상이 되는 2백만 SDR 이상, 양허성 수준 35~80%의 타이드 원조를 말함

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7)



□ 2007년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 전체의 61.5% 정도를 제공

○ 주요 공여국은 일본(46.3%), 네덜란드(15.3%), 스페인(13.5%), 한국(9.0%), 프랑스(4.1%), 오스트리아(3.5%)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었고, 개별국가로는 베트남을 가장 많이 지원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집중(56.9%)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7년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22.5%), 태국(18.2%), 모로코(7.9%), 스리랑카(7.8%), 중국(7.6%), 케냐(5.7%), 몽골(4.1%), 가나(3.8%)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과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분야에 집중

○ 교통 부문(철도, 도로, 해상운송, 항공 등)은 2007년 전체 실적의 65.9%,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은 26.2%를 차지

-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통신, 에너지, 제조 부문에 제공된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감소추세
  - 통보된 127건 중 10건만이 동 분야에 지원됨
- **소액차관(de minimis)<sup>3)</sup>은 통보 건수 및 금액 모두 소폭의 증가**
  - 소액차관 통보 추이 : 89.5백만 SDR(75건, 2004년) → 57백만 SDR(48건, 2005년) → 44.5백만 SDR(37건, 2006년) → 48.0백만 SDR(48건, 2007년)
  -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스페인(21.3%)이 가장 많은 소액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15.1%), 프랑스(12.6%), 네덜란드(10.5%) 등이 뒤를 이음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는 8.1억 SDR(35건)로 전체 타이드 원조의 24%를 차지**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의 공여국은 미국(61.8%), 스페인(23.1%), 이태리(6.4%) 등 3개국이며 주요 지원분야는 다부문(28.6%)과 수자원 및 위생(19.0%)
- **매칭(matching) 통보 건수는 199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4~6건에 불과**
  - 1992년 Helsinki 원칙이 도입되어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칭 건수는 1993년부터 점진적인 감소세가 시작됨
    - 1995년 항공운송 부문에서의 미국에 의한 다수의 매칭통보(35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
  - 2007년 매칭 통보 건수는 6건으로 모두 EC 회원국이 통보
- **대면협의(consultation)를 받은 사업 건수도 1996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7년 역시 2006년에 이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
  - 1996년에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기준을 제시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이 마련되면서 대면협의 사례가 감소
  - 2008년 2월 한국의 인도네시아 통신분야 지원 관련 71차 대면협의를 있었음

3)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2백만 SDR 미만의 소액 차관

## 나.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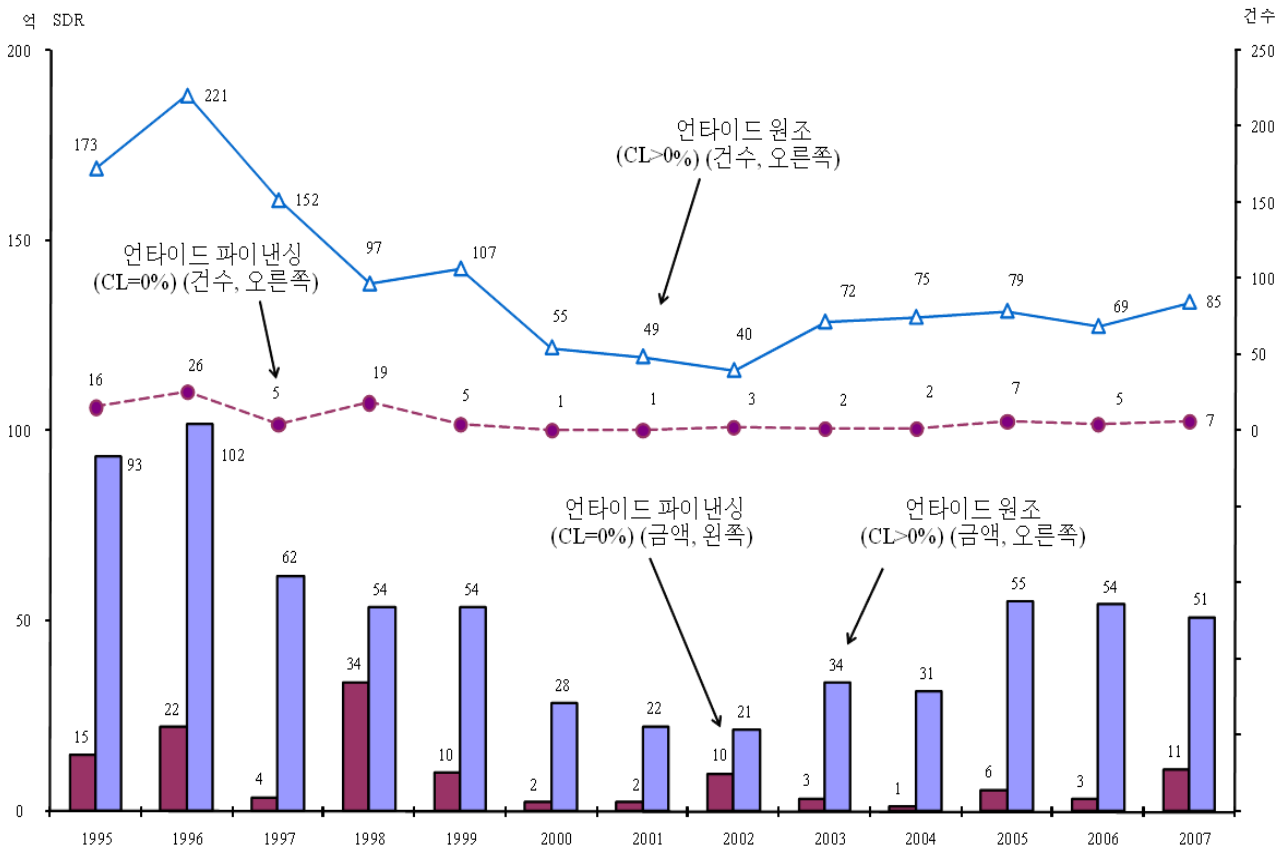
□ 2007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51억 SDR)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47억 SDR)을 소폭 상회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85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으나, 통보금액은 전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51억 SDR를 기록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31억 SDR(2004년) → 55억 SDR(2005년) → 54억 SDR(2006년) → 51억 SDR(2007년)

※ 언타이드 파이낸싱<sup>4)</sup>은 총 7건, 11억 SDR을 기록해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언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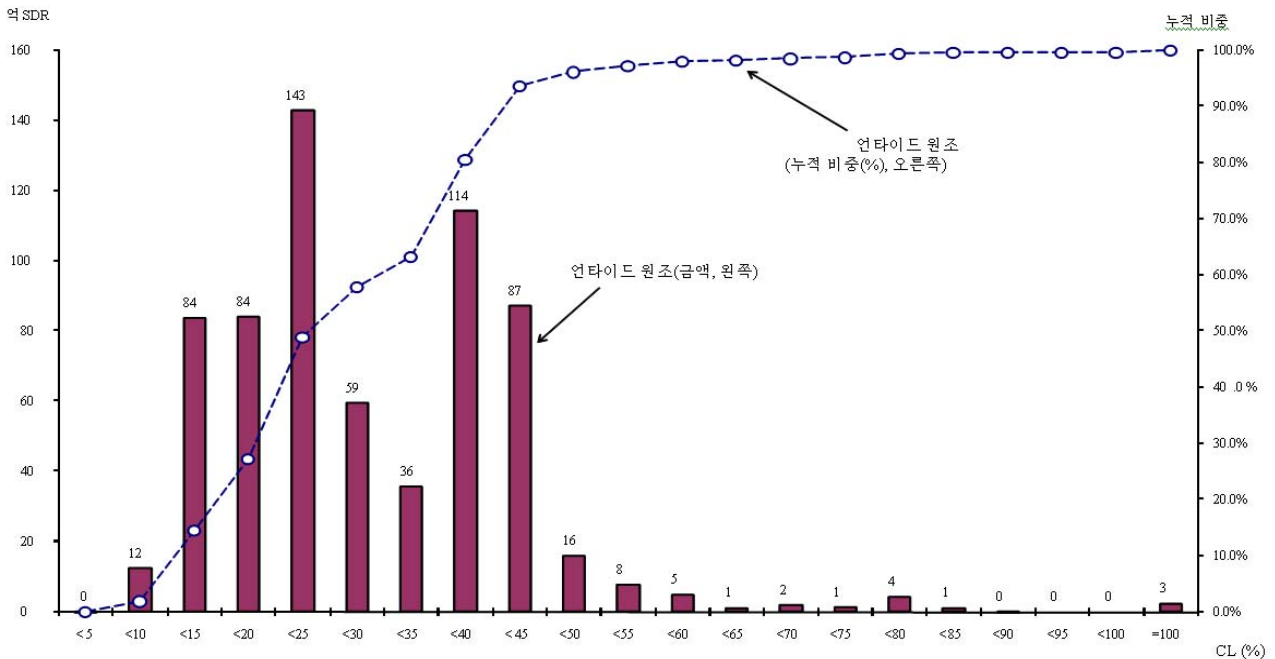


4) 언타이드 파이낸싱은 양허성 수준이 0%인 언타이드 자금지원(원조가 아님)으로 협약의 통보대상은 아니나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이 인도, 중국, 태국 등을 대상으로 언타이드 파이낸싱을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

- 2007년 언타이드 원조의 60.5%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ty level) 35% 미만으로 지원되었으며, 25~30% 사이에 집중(24.8%)됨
- 언타이드 원조의 과거 13년간(1995~2007) 평균 양허성 수준은 28.64%
  - 양허성 수준 25% 이하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허성 수준 35% 이하는 60%를 넘어섬
  - 동 기간 각국의 평균 양허성 수준은 영국(100.0%), 네덜란드(81.0%), 이태리(50.6%), 스페인(45.1%), 노르웨이(43.2%), 독일(41.3%), 덴마크(32.2%), 스웨덴(27.9%), 일본(27.4%), 프랑스(27.4%) 순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 구성(1995~2007)



\* 과거 13년간(1995~2007)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의 합계금액(662억 SDR)을 대상으로 작성

□ 언타이드 원조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전체 통보금액의 약 89%를 차지

- 2007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88.8%), 프랑스(10.0%), 독일(0.9%) 순이며 특히, 일본은 금액과 건수(58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일본은 과거 13년간(1995~2007) 언타이드 원조의 89.9%를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2007년 베트남이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
  - 2007년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28.5%), 인도(20.4%), 인도네시아(13.4%), 중국(12.6%) 순
  - 과거 13년간(1995~2007) 주요 수원국은 중국(16.2%), 인도네시아(11.4%), 인도(11.0%), 베트남(9.5%), 태국(6.6%) 순
    - 이들 국가에 대한 양허성 수준은 중국 28.3%, 인도네시아 26.6%, 인도 25.5%, 베트남 30.4%, 태국 22.0%
  
- 2007 언타이드 원조는 에너지 부문과 수자원 및 위생 부문을 주로 지원
  - 2007년 주요 지원부문은 에너지(26.0%), 수자원 및 위생(25.0%), 교통(18.8%) 순
  - 과거 13년간(1995~2007) 언타이드 원조는 절반 이상이 교통 부문(29.2%)과 에너지 부문(23.3%)에 집중

**【참고】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sup>5)</sup>한 모의실험<sup>6)</sup> 결과**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가상으로 적용해 봄
  - 언타이드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타이드化되어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언타이드 원조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참가국의 주장에 따름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주로 언타이드 원조의 낮은 양허성 수준으로 인해 과거 언타이드 원조실적의 약 68.8%가 헬싱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3년간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662억 SDR) 중 455억 SDR<sup>7)</sup>이 헬싱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과거의 언타이드 원조를 모두 헬싱키 타이드 원칙에 맞게 지원하려고 했다면 참가국들은 언타이드 원조예산을 45.3% 늘렸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옴
  - 과거 13년간의 언타이드 원조금액(662억 SDR)과 언타이드 원조의 평균 CL(28.64%)을 감안할 때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grant)은 189.6억 SDR<sup>8)</sup>에 달함
  - 이를 언타이드 원조예산으로 볼 때, 헬싱키 원칙의 CE기준과 CL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조예산의 약 45.3%, 즉 86억 SDR<sup>9)</sup>의 추가 예산이 필요



## II.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1. 투명성 합의의 개요

#### □ 투명성 합의의 의미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1월 제93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로서 2년간(2005.1~2006.12) 시행되었으며, 2006년 11월 제98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그 유효기간이 2008년말까지로 연장됨
- 동 합의는 언타이드 원조신용(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사용 등을 골자로 함

#### □ 통보 대상

- 투명성 합의의 통보 대상은 언타이드 원조신용(Untied ODA Credits)으로 이는 주로 언타이드 차관을 말함
- 사전 및 사후 통보대상은 5백만 SDR 이상의 원조차관과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FEED, A&E, PRTA 등)임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2. 통보 내용

#### 가. 사전통보(ex ante notification)

- 2007년에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총 116건, 85억 SDR을 기록해 2006년(38억 SDR)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기록
-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총 9개 공여국이 참가해 사전통보 참가국도 증가

5)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성 기준(commercial viability)은 배제하고 적격국가 기준(country eligibility)과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minimum concessionality level)만을 적용  
6) 과거 13년간(1995~2007)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실적(1,274건, 662억 SDR)을 대상으로 분석  
7) 적격국가 기준(CE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59억 SDR)와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CL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396억 SDR)가 이에 해당  
8) 즉, 원조예산 = 662억 SDR × 28.64% = 189.6억 SDR  
9) CE기준에 따라 비적격국가에 대해서는 CL 80% 이상을 맞춰야 하므로 29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고, CL기준에 따라 최저 CL(35%)을 맞춰야 하므로 57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 86억 SDR의 추가 예산이 필요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74억 SDR)으로 사전통지된 원조금액의 87.5%를 차지했음
  - 2007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87.5%), 프랑스(6.3%), 독일(2.6%), 네덜란드(1.6%) 순이고, 주요 수원국은 이라크(22.8%), 베트남(18.5%), 인도(12.4%), 중국(7.8%)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에너지 부문, 수자원 및 위생, 교통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7년 광물자원과 탄광 부문(8.9억 SDR)의 증가가 두드러짐
  - 주요 지원부문은 에너지(27.9%), 교통(23.4%), 수자원 및 위생(17.9%)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절반 이상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
  - 전체 사전통보 건(116건) 중 70건(69억 SDR)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56건), 독일(8건)이 이를 지원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입찰(ICB)을 적용
  - 투명성 합의는 구매계약시 가능한 한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91.7%는 ICB를 적용한 반면, ICB 적용이 어려운 7.4%는 현지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0.6%는 수의계약(Single Tendering)을 적용함

## 나. 사후통보(ex post notification)

- 2007년 11월에 열린 제 101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사후통보실적이 200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
  - 그러나 참여국들은 사전통보는 지원금액(Credit amount)으로 통보되며, 사후통보는 실제 계약금액(Contract amount)으로 통보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2008년 8월까지 사후통보 실적 취합이 마감되는바, 2005~2007년 실적을 8월 이후 분석 가능

###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2007년 타이드·언타이드 원조의 총 통보 규모(98억 SDR)는 전년대비(92억 SDR) 증가하였으며 향후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차츰 늘어날 전망
  - OECD는 DAC회원국의 2007년 ODA 규모(잠정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1,044억 달러 → 1,037억 달러, 순지출 기준)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부채탕감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타이드 원조는 Helsinki 원칙을 잘 따르고 있으며, 언타이드 차관은 최근 도입된 투명성 합의에 따라 통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90% 이상이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분야(교통, 교육, 보건, 수자원·위생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타이드 원조의 대면협의 건수와 매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92년 도입된 Helsinki 원칙과 '96년 마련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됨
    - 대면협의는 '06~'07년에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매칭은 최근 4~6건으로 줄어들음
  - 2005년부터 시행된 언타이드 원조신용에 대한 투명성 합의에 따라 원조공여국은 사전·사후 통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동 투명성 합의에 따라 언타이드 차관을 통보한 국가는 전년대비 늘어난 9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국제경쟁입찰(ICB)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상존하나 언타이드 차관의 수주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규제방안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가 2008년 8월말까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향후 논의가 계속될 전망

자 료 : 1. Tied Aid: 2007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2008.4  
2. Untied Aid: 2007 "Shadow" Helsinki Review of Untied Notifications, 2008.4  
3. 2007 Full-Year Review: Arrang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2008.3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mailto:danielee@koreaexim.go.kr)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붙임)

## 원조사업의 OECD에 대한 통보의 종류

### 1.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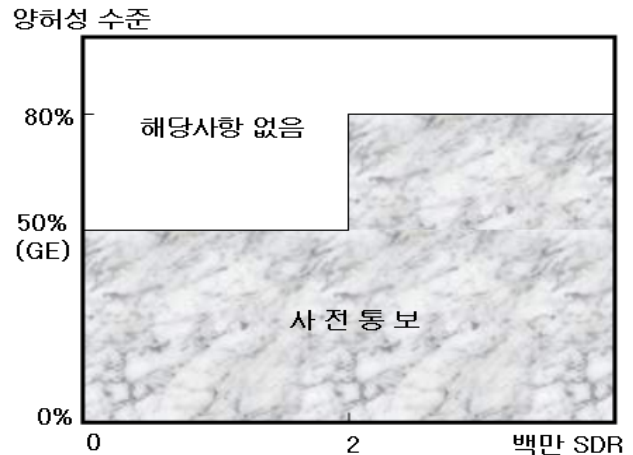
통보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무역관련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미만
	언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증여율이 50% 미만
사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이상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이상
	언타이드 원조	해당사항 없음

〈 타이드 원조 〉



〈 언타이드 원조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입찰마감일 또는 원조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영업일 이전에 통보
- 사후통보 : 약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

통보 내용

-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모두 동일한 통보양식을 사용하여 건별로 통보
  - 기본정보, 수입자/차주/보증인 정보, 수출되는 재화용역 및 프로젝트관련 정보, 금융조건, 원조형태, 양허성 수준, 차등할인율(DDR)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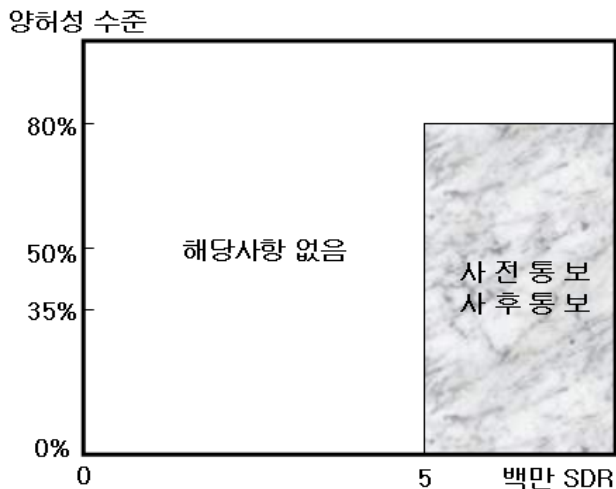
## 2.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통보 대상 :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인 언타이드 차관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 포함)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언타이드 차관	지원금액이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기술협력	13만 SDR 이상의 투자연계기술협력(IRTC)*

\* 투자연계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원(FEED), 건축엔지니어링지원(A&E),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을 말하며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 또는 수행과는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는 구분됨

〈 언타이드 차관 〉



〈 기술협력(IRTC) 〉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건별로 입찰개시일 **30일전**까지 통보
- 사후통보 : 직전년도 사전통보 건의 **입찰결과**를 집계하여 차년도에 일괄 통보(연1회)

###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 프로젝트 금액, 공여국, 수원국, 프로젝트 개요, 입찰정보, 구매주관기관, 기술협력, 차관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사후통보 : 사전통보번호, 공여국, 수원국,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

목차보기

ODA 토포 2

## 개도국에서의 로컬 구매 촉진

### Promoting 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요약】

- DAC 회원국들은 원조의 언타이드화 노력의 일환으로 개도국에서의 로컬 구매(LRP)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그러나 많은 지역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취약한 경쟁력 등 실질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로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교환, 계약절차 합리화 등의 방안이 필요
- 또한, DAC 회원국 중에서 지역 기업의 입찰에 일부 제한이 있는 국가는 EC, 미국, 일본, 스위스 등으로 조사됨

#### I. 배경

-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2001) 이후 개도국에서의 로컬 구매(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LRP)를 촉진하기 위한 DAC 회원국들의 노력이 계속 되어 왔음
- DAC 회의(2008.4.18)에서 사용된 언타이드 원조의 촉진을 위한 토의 자료를 토대로, LRP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의 원조 구매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 LRP는 지역시장과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수원국의 주인의식 증진에 공헌

#### II. 지역·지방 구매(LPR)의 한계

- 법적 한계
  - 많은 공여국이 국제경쟁입찰제도나 수원국내 경쟁입찰제도를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주관하는 구매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한계는 많지 않음 (붙임 'DAC 회원국의 원조 구매제도 및 현황' 참조)

- 미국은 예외적으로 자국 공급자들로부터의 구매를 극대화하고 있음
  - Federal Acquisition Rules에 의거 미국기업들 사이의 구매를 원칙으로 함
  - USAID는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LRP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있어 LRP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음
-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기술협력은 자국 구매로 제한하고 있음. JICA는 컨설턴트는 자국 구매로 제한하나, 장비의 경우 지역 시장으로부터의 구매에 우선순위를 부여

## □ 실질적 한계

- 지역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공여국 입찰제도 경험 부족, 거리상 떨어진 공여국과의 조정 문제, 성과표준 관리 경험 부족, 사업수행 자본부족, 경험 있는 다국적기업들 대비 경쟁력 열위 등으로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
  - 컨설턴트의 경우, 공여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부족
-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몇몇 지역기업들도 실질적 한계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의 대다수는 또한 투명성, 시간·절차 단축, 빠른 대금지급 때문에 자국 정부보다는 공여국 정부가 구매하는 것을 선호
- 지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입찰과정이 전반적으로 공여국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편향(unintended bias)되어 있으며, 지역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방해한다고 인식
  - 시장 정보: 불충분하고 접근불가능한 입찰 공고, 공여국 계약팀의 신규 입찰 참여자에 대한 정보 부족
  - 표준화된 계약: 계약 표준화로 인해서 소규모 계약에 불필요한 조항 포함
  - 사업 스펙 조건: 로컬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불리하게 하는 사업 스펙 조건
- 실질적인 한계는 주로 공급측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실질적 한계가 법적 한계보다 더 중요

### III. 로컬 구매(LPR) 시장

#### □ 잠재 시장 (구매 시장 규모)

- DAC 회원국의 대부분은 구매시장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움
  -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의 구매시장 합계는 2006년 USD 3.3백만에 이르며, 이는 이들 5개 국가 전체 양자간 ODA의 8% 정도를 차지
  -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2006년 구매 시장 규모는 USD 8억 정도
  - 그러나 점진적으로 재정지원과 분야별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여국이 관여하는 구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재정지원과 분야별지원은 프로그램원조의 일부로, 수원국 정부가 직접 구매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관리함
- ADB, IDB, AfDB의 구매시장 규모는 2006년 USD 9.3억에 이룸
- DAC 회원국은 수원국 재정지원과 분야별지원에 2006년 USD 9.8억을 지원. 이 금액의 상당부분이 수원국의 구매재원으로 사용됨
- 다수의 DAC 회원국들에게 구매는 대부분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고용인 반면, 일본은 장비 구매에,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노동집약적 구매에 주로 집중하고 있음

#### □ 로컬 구매(LRP) 현황

- LRP는 DAC 구매 시장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DAC 언타이드 원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2~2005년 사이 보고된 사업들 중 지역 기업들이 40%의 계약을 수주
  - 룩셈부르크는 LRP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프랑스 AFD는 45%에 이룸
- 국제개발은행에서는 LRP의 비중이 높음. ADB와 IDB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계약의 대다수를 수주
  - AfDB의 경우, 대부분의 대규모 계약을 다국적기업들이 수주하고 있지만, 2006년 AfDB의 전체 구매중 절반 이상을 아프리카 기업들이 수주



- DAC 구매 전문가들은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잘 구축된 구매시장과 컨설턴트 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술 상품과 수준 높은 전문가 고용이 용이해 졌음을 강조
  - 세네갈과 부르키나파소는 AfDB의 컨설턴트 고용의 15%를 차지

#### □ 로컬 구매(LRP) 형태

- Joint-Venture나 Sub-contracting, 국제컨소시엄 등 광범위한 LRP 형태가 존재. 이러한 형태는 기술이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 기업이 국제 구매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기도 함
- DAC 회원국들은 LRP를 촉진하기 위해 가격선호정책(price preferences)을 사용하지는 않음
  - ADB 내부연구는 가격선호정책이 LRP를 촉진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
- DAC 회원국의 해외사무소들은 소액의 물품 구매시에 지역내 경쟁과 직접구매를 활용. 영국의 경우 이 부분이 전체 구매의 10%를 차지. 그러나 해외사무소 간 로컬 구매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은 것은 한계

### IV.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 □ 정보 교환과 상호 협의 촉진

- 지역 기업가들과 정례 협의회(regular dialogue)를 추진하여 정보 제공
  - 호주는 인터넷 기반의 국제입찰과정에 대해 이메일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영국은 중요 시장에 로컬 구매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했음
  - 지역 Consultative Group 조성이 필요
- 지역매체, 공여국 해외사무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규모 구매 입찰정보 홍보
  - 공여국 해외사무소의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입찰정보를 소개해 공급자끼리의 네트워크 형성과 Joint-Venture 구축을 촉진

- 구매과정에 필수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
  - 독일과 일본은 시장원칙에 맞는 지역 구매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 파견자 역량강화에 힘씀
- 해외사무소간 지역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 □ 계약절차 합리화

- 계약의 간소화
  - 캐나다는 USD 10만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계약서 사용. 덴마크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 삭제(예, 보험)
- 계약의 표준화
  - Nordic+ group 국가들은 표준화된 계약 정책을 채택
- 지역 컨설턴트 리스트 조성
  - (예) ADB Data on Consulting Firms (DACON), CIDA mission databases of local consultants, UNDP missions' assured suppliers lists
- 전자 구매와 같은 비용절감적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 □ 구매와 개발목표의 연계

- 구매를 통해 개발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 검토
  - 네덜란드의 수원국 민간부문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공급망 사용을 위한 자금조달을 포함
- 입찰정보가 개발목표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
  - (예) 룩셈부르크의 Dosso Basic Education Project: 여러 지역장인(匠人)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 입찰 전과정에 수원국 당사자 참여를 유도
  - 핀란드는 입찰 전 과정에 수원국 당사자를 참여시킴
- Joint-Venture를 촉진해 기술이전을 꾀함

## V. 수원국의 구매

- 수원국 정부의 구매시장은 LRP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지역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구매시장 참여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DAC 회원국이 수원국 구매시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규제환경 조성, 민간부문 개발, 직업교육 강화 및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

## VI. 결론

- DAC 회원국은 정보 교환과 상호 협의 촉진, 계약절차 합리화, 구매와 개발목표 연계에 중점을 두어,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 한계 극복을 돕는 **Good practice**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

붙임: DAC 회원국의 원조 구매제도 및 현황

자 료 : Promoting Local and Regional Proc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DCD/DAC(2008)21), OECD. 2008. 3.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붙임)

## DAC 회원국의 원조 구매제도 및 현황

### □ 호주

- 지역 기업들의 입찰에 제한 없음
  - **Australia-Indonesia Partnership** 제외(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만 입찰가능)
- 공개입찰 원칙(소액의 구매나 직접구매를 인정하는 경우 제외)
- Aus Tender(정부 입찰정보 홈페이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공개
- AusAID의 현지사무소는 AUD 500,000 이하에 대해서만 구매가 가능

#### 호주(AusAID)의 원조 구매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구매금액 (백만AUD)	225	571	622
그 중 지역기업의 수주	8	20	22
양자간 ODA 중 구매 비중*	14%	30%	26%

\* 전체 ODA(순지출기준)에서 다자간 기구 출연 제외

### □ 오스트리아

- 지역기업들에게 입찰 제약은 없으나, 유럽 회사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하고 입찰 성공한 경우는 드물
- EU Procurement Directive(오스트리아 법안명 BvergG 2006) 준수
- 211,000 유로 이상의 구매계약은 OJEU(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와 Tenders Electronic Daily를 통해 공개
- 40,000 유로 이하의 구매계약은 직접구매 가능

### □ 벨기에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제한 없음
- 수원국의 구매시스템을 활용하며,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BTC)이 입찰과정을 지원

- EU Procurement Directive에 준거해 BTC가 직접 구매하기도 하며, 이중 22,000 유로 이상의 구매는 모두 공개
- 수원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벨기에 관보 및 수원국 언론을 통해 공개

□ 캐나다

- 원칙적으로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제한 없음
- 프로젝트별 편차는 있으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국적이 아닌) 프로젝트 적합성에 따라 지원자격을 부여
- CIDA의 해외사무소는 CAD 100,000 이하의 금액만 구매가 가능하며, 지역 컨설턴트 풀을 보유
- CAD 100,000 이상의 구매는 본부가 진행하며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개

□ 덴마크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EU Procurement Directive 준수
- OJEU, DANID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EU Procurement Directive에서 정한 기준금액(competition threshold) 이하의 소규모 구매는 대사관을 통해 진행

덴마크(DANIDA)의 원조 구매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구매금액 (백만DKK)	532	473	421
그 중 지역기업의 수주	n/a*	n/a*	n/a*
양자간 ODA 중 구매 비중	7%	6%	5%

\*n/a: not available

□ EC (European Commission)<sup>10)</sup>

- 수원국은 모든 경우에 입찰적격국이 되며,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특정 경우에 (in some cases) 입찰 가능

10) "EC의 ODA사업 입찰참여 자격요건" 참조 (ODA 동향, 2007. 4호)

- Cotonou 협정은 ACP(Africa, Caribbean, Pacific) 국가들의 입찰을 장려
- 경쟁입찰의 원칙을 따름
  - 기준금액 이하의 구매는 제한적 입찰과 포괄적 협정 등을 사용
- OJEU, 회원국 관보, EuropeAid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 핀란드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시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지역기업의 참여를 장려
- 수원국, 또는 (OECD/DAC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의 구매제도 활용
  - 기준금액 이하의 구매는 제한적 입찰과 직접구매 활용
  - EU Procurement Directive에 근거한 국내법의 경쟁·투명성·비차별 원칙 적용
- 15,000 유로 이상의 사업은 공식 입찰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핀란드어, 스웨덴어)

## □ 프랑스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2006년 지역기업이 계약의 45%를 수주했음
  - 장기의 기술협력 사업 관련 인력은 직접구매 방식을 적용하여 프랑스 공무원 고용
- AFD(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는 수원국의 구매제도 시스템 활용
  - 각 단계별 AFD의 “반대 없음(no-objection)” 허가를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

## □ 독일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지역 전문가와 컨설팅 회사에 높은 우선순위 부여
    - 2000년 지역기업이 39%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2005년에는 그보다 증가한 56%를 수주
- 대부분 수원국에 의해 구매 진행
  - GTZ(기술협력공사) 기술협력사업의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GTZ의 직접구매가 가능
  - 차관의 경우,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
- News for Foreign Trade(관보)와 BfAI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그리스

- EU Procurement Directive에 기초한 경쟁입찰 방식 (지역기업들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음)

아일랜드

- 완전 언타이드로 구매가 이루어지며,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제약 없음

이탈리아

-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를 채택 (지역기업들의 입찰참여가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음)

일본

- 구매는 일본과 수원국이 협의한 적격구매대상을 통해 이루어짐
  -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예, Grass Roots Human Security Projects)은 일본 이외의 컨설턴트와 업체에 개방
- JICA는 2004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기술협력사업 장비를 지역에서 구매하겠다고 선언
  - 이에 따라 2,500만엔(약 U\$250,000)이하의 구매는 JICA 지역사무소를 통해 구매
  - 지난 3년간 200만엔 이상의 구매 가운데 75%를 지역에서 조달했음
- 차관의 경우, 국제·지역입찰을 통해 구매
  - STEP(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의 경우, 일본기업 중에서 구매하도록 규정
  - 일본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하에서 차주국 또는 협조융자기관의 입찰제도 활용
  - 2006년 60%의 계약을 개발도상국 기업들이 수주(그 중, 인도기업이 가장 많은 계약 수주)

룩셈부르크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보통 Lux-development의 지원하에 수원국의 구매 시스템을 활용
  - EU Procurement Directive를 준수
- 50,000 유로 이상 규모의 구매는 정부 웹사이트, 언론 등을 통해 홍보

룩셈부르크(Lux-Development)의 원조 구매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구매금액 (백만 유로)	56	62	61
그 중 지역기업의 수주	34	37	36
양자간 ODA 중 구매 비중	41%	41%	38%

□ 네덜란드

- Dutch Aid의 구매는 기존에 이미 수립된 민간부문 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완전 언타이드화
- EU Procurement Directive 준수
- 137,000 유로 이상의 구매는 OJEU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

□ 뉴질랜드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을 활용하는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예외
- NZD 100,000 이상의 구매는 공개경쟁입찰이며, 그 이하의 구매는 비공개 입찰과 Approved Contractor Scheme 활용

□ 노르웨이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보통 수원국의 구매 제도를 활용하며, NORAD의 직접구매는 디자인·모니터링을 위한 단기 컨설턴트 고용 등에 적은 규모로 이루어짐

□ 포르투갈

- 지역기업들에 대한 제한 없음
  - 장기의 역량강화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포르투갈 정부나 대학의 자원을 활용
- 수원국의 구매제도 활용
  - EU Procurement Directive 준수



## □ 스페인

- 스페인의 ODA는 주로 언타이드로 이루어짐 (2012년까지 완전 언타이드 계획)
  - 따라서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 스웨덴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수원국의 구매제도가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의 활용을 선호함 (공공구매법에 명시)
  - 금액이 큰 입찰(SEK 300,000 이상, 물자구매의 경우 SEK 100,000 이상)은 공개입찰
- SEK 200,000 이상의 모든 구매는 공개

## □ 스위스

-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구매는 보통 언타이드로 이루어지며, 가능한 경우 지역구매 장려
- SECO(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의 체제전환국(transition countries)에 대한 지원은 스위스 기업만 입찰 가능하며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스위스산(Swiss content)으로 구성되어야 함
  - 따라서 지역기업은 50% 이내에서 Sub-contractor로만 수주 가능
  - 단,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의 경우는 언타이드로 구매
  - 스위스는 전체 ODA구매의 1.5%만이 타이드로 이루어진다고 추정
- CHF 50,000 이상의 구매는 보통 경쟁입찰 적용
- Swiss Commercial Gazette(관보)를 통해 입찰 정보 공개

## □ 영국

- 지역기업들의 입찰에 대한 제한 없음
- DFID의 구매(GBP 94,000 이상)는 국제경쟁입찰 적용
  - EU Procurement Directive 준수
  - 직접구매의 경우 금액이 적은 소규모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임

영국(DFID)의 원조 구매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구매금액 (백만GBP)	244	219	171
그 중 지역기업의 수주	18	28	23
양자간 ODA 중 구매 비중	8%	5%	4%

□ 미국

- 미국 기업들 사이의 경쟁입찰이 원칙임(Federal Acquisition Rules 적용)  
- 공식적으로 "Buy America" 원칙을 적용
-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경우 수원국의 구매시스템과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활용
- USAID는 90%이상의 수주기관이 미국국적이지만, 하청계약(Sub-contracting)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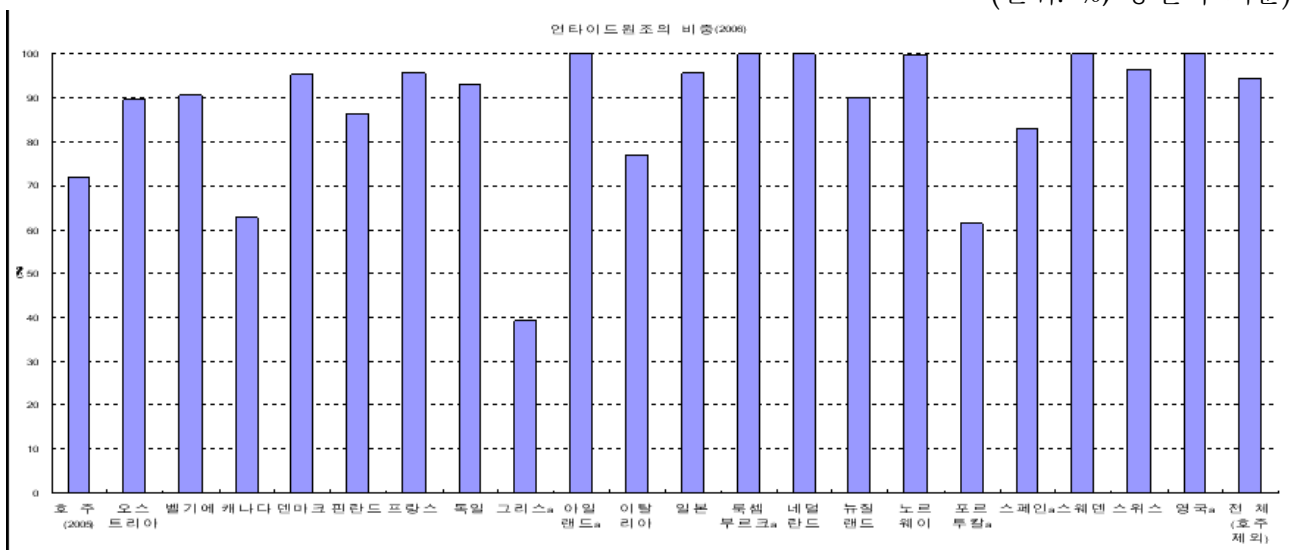
미국(USAID)의 원조 구매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구매금액 (백만USD)	2,810	2,420	3,640
그 중 지역기업의 수주	76	142	393
양자간 ODA 중 구매 비중	11%	11%	n/a

(참조)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원조 비중(2006년)

(단위: %, 승인액 기준)



a: 총지출 기준, 미국은 미보고

목차보기

ODA 토크 3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요건 및 절차의 개정 추이

### 【요약】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는 1995년에 제정되어 2004년에 개정되었음
- 2004년 개정본에는 개정전 대비, 신청국 원조의 양적요건은 다소 완화된 반면 DAC 회의 및 산하기구 활동 참여 등의 의무사항이 강화되었음

### 1. 목 적

-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2010년을 목표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바, DAC가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사항과 따라야 할 절차 등을 살펴보는 한편,
- 과거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2004)'의 개정추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개정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함
- 동 비망록에서 기술한 DAC가입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은 매 5년 주기로 개정 검토됨(2009년도 개정 검토 예정)

### 2. DAC가입요건 및 절차

- DAC 가입 신청국에게 적용되는 요건 및 절차는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에 기술되어 있으며, 동 비망록은 1995년에 최초 제정되어 2004년도에 개정

- DAC 가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참고문건은 'Non-OECD회원국의 OECD 활동 참여에 대한 OECD의회의 결의문'<sup>11)</sup>으로서, 동 결의문은 Non-OECD회원국을 관찰국(Observer) 또는 회원국 등으로 영입하기 위해 필요한 OECD의회의 승인 절차를 기술한 문건으로서, 중요한 검토기준으로 (i) Major Player 여부, (ii) Mutual Benefit 유무를 제시하고 있음

#### □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2004 개정본)의 주요내용

##### ○ 도입(Introduction)

- DAC의 임무(Mandate Statement)와 DAC가입이 국제개발노력에 대한 의지의 표명임을 천명
- 동 비망록에서 기술한 가입절차의 적용대상은 OECD회원국임을 명시
- 개발원조동향 반영을 위해 매 5년마다 가입절차의 개정을 검토

##### ○ 절차(Process)

- ①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DAC 가입 의사와 더불어 가입절차를 진행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DAC 사무국앞으로 전달
- ② 사무국은 동 가입신청서를 분석하고, 신청국가의 개발협력 담당기관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
- ③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동 보고서는 가입신청국의 다음 요소들에 대한 평가내용을 포함해야 함
  - (i) 원조와 관련한 적절한 전략, 정책 및 제도적 체계 수립 여부
  - (ii) 원조 공여 노력 여부  
(0.2%를 초과하는 ODA/GNI 비율 또는 연 1억불이상의 원조공여실적)
  - (iii)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 여부
- ④ DAC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국의 대사(Ambassador)는 OECD사무총장에게 신청국 정부의 가입의사를 담은 공식서한과 함께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는 데, DAC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11) Resolu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Non-member Economies in the Work of Subsidiary Bodies of the Organization

- (i) DAC 출범이후 채택된 모든 권고사항<sup>12)</sup>의 즉각적인 이행 및 DAC 지침과 참고문건의 내용에 따른 국가원조정책의 수립<sup>13)</sup>
- (ii) 매년 요구되는 ODA통계의 제출
- (iii) 모든 DAC 전체회의 참석 및 9개 산하기구<sup>14)</sup> 중 최소한 1개 기구의 회의 참석
- (iv) 원조노력과 정책을 기술한 요약정보를 매년 제출
  - 제출된 정보는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에 Notes on DAC Members로 보고됨
- (v) Peer Review 수감 및 타회원국에 대한 Peer Review 수행 의무

※ 공식적 가입 발효시점 : OECD 사무총장이 상기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접수하고, 신청국이 DAC요구수준에 맞는 연간 통계치를 제출한 시점

### 3.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의 개정 경위 및 주요 개정 내용

#### 가. 개정 경위

- 1995. 3. 10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 최초 제정
- 2004. 1. 14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 1차 개정 초안 작성
- 2004. 1. 23 809차 DAC회의에서 동 개정안 논의
- 2004. 2. 6 809차 DAC회의 논의내용에 따라 2차 개정 초안 작성
- 2004. 2. 17 810차 DAC회의에서 2차 개정 초안 논의
- 2004. 5. 26 DAC가입에 관한 비망록 최종 개정안 확정 및 발효

#### 나. 개정 배경

- 2004년 개정 당시기준, DAC회원국수는 출범시점<sup>15)</sup>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잠재적 회원국<sup>16)</sup>수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12)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1978),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1) 등

13) DAC의 각종 권고 및 지침은 통상적으로 각종 국제회의 또는 G-8 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의제를 중심으로 DAC회의에서 의제도입여부를 결정하고, DAC 산하 9개 작업반을 통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초안을 작성한 후, DAC 고위급회담(HLM) 또는 준고위급회담(SLM)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수립됨

14) Working Party on Statistics/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Network on Gender Equality/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Network on Poverty/Network on Governance/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Fragile States Group

15) DAC 창립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16) OECD회원국 중 Non-DAC 8개국, EU가입추진국 및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기타 원조공여국을 의미

-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DAC 활동(회원국 또는 관찰국으로서) 참여 요청이 증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DAC가입에 대한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요구
- DAC참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i) DAC 참여수준(회원국, 관찰국, 비공식협력)
  - (ii) 가입기준
  - (iii) 가입적격국 결정 절차
- 상기 우선순위 중 (i) **DAC 참여수준은 1995년도 비망록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Non-OECD회원국 및 OECD회원국의 DAC 참여수준은 각 국의 참여의지와 물리적인 회의참석 능력에 좌우되므로 모든 원조공여국은 각 국의 참여관심 수준과 참여능력에 맞는 참여형태(회원국, 관찰국, 비공식협력)를 취해야 함을 강조**
  - ⇒ 2004년 개정 비망록에는 신청국의 DAC회의 참석을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새롭게 추가하였음

#### 다. 개정 내용

- 2004년 개정배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809차 DAC회의에 제출된 동 비망록의 1차 개정초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차 개정초안 주요내용

- 기본요건
  - [관찰국 또는 Non-DAC 회원국으로서 DA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관심과 능력을 과거 3년간 보여주었는지 여부]
  - 상당한 규모의 양자간개발협력프로그램 유지 여부
  - 과거 3년간 0.2%의 ODA/GNI비율을 유지 여부 및 DAC평균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과거 3년간 연1억불이상의 원조규모 유지 여부
  - 과거 3년간 표준통계자료의 보고여부

○ 절차

- ①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DAC 사무국앞 가입의사 및 가입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첨부로 상기 기본요건 정보를 제공
- ② 사무국은 제출된 정보를 분석하고, 후보국의 개발협력 담당기관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
- ③ 사무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DAC회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 ④ DAC회의후 DAC 의장은 가입제의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이 승인
- ⑤ DAC승인을 득한 후, 신청국의 대사는 OECD 사무총장앞으로 신청국정부의 가입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고, 이때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도 제출
  - (i) DAC 출범이후 채택된 권고사항의 이행 및 DAC 지침과 참고문건에 따른 국가원조정책의 수립
  - (ii) ODA통계자료를 매년 제출
  - (iii) 모든 DAC회의에 참석할 능력 유지
  - (iv) 원조노력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
  - (v) Peer Review 수감 및 타 회원국 Peer Review 수행 의무

□ 1차 개정초안에 대한 809차 DAC회의의 주요논의내용

- 원조의 양적 가입요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분류
- (a) 양적 가입요건 무용론
    - DAC가입은 원조공여국이 국제개발협력에 상당한(Considerable) 규모의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b) 0.2%의 ODA/GNI 비율
    - 1995년 당시 DAC의 GNI대비 원조공여비율이 0.3%를 초과할 때엔 타당한 기준이었으나, 동 비율이 0.23% 수준으로 낮아진 2004년 현재, 이는 가입요건으로서 다소 가혹한 기준으로 보임. 다만, 동 요건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DAC평균의 75%에 해당하는 0.15%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c) 0.2%의 ODA/GNI비율 또는 연간 1억불이상의 원조규모

- 원조의 절대적 수치는 크지만 해당국의 GNI가 높아 동 비율이 낮게 산정되는 국가의 DAC가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b)보다 우호적인 요건임

○ 기타 의견

- DAC 회원가입이 해당국 원조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Non-OECD회원국의 DAC 가입은 DAC가입요건과 더불어 OECD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함

□ 809차 DAC회의내용을 바탕으로 DAC의장은 1차 개정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Aide Memoire 첫 문단에 DAC가입이 개발노력에 대한 해당국가의 의지의 표현임을 천명
- 1차 개정초안에 포함된 기본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사무국이 작성하는 보고서에서 원조의 양적·질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EC의 제안대로 신청국가의 ODA통계자료 제출을 공식적인 DAC가입발효요건으로 함

⇒ 사무국이 809차 DAC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2차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810차 DAC회의 안건으로 제출토록 함

□ 810차 DAC회의결과, 다음 세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2차 개정초안에 동의하고 사무국이 최종안을 작성토록 함

- (i) 1961년도 DAC의 mandate statement를 도입부문에 삽입
- (ii) 동 수정안이 OECD 회원국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되, Non-OECD 회원국들에게도 문호는 개방토록 함
- (iii) 일부 문구 수정



## 라. 주요 개정내용 정리

□ 도입부(Introduction)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도입부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음

- DAC의 mandate statement 삽입
- DAC가입은 국제개발노력에 대한 의지의 표명임을 천명
- 동 가입절차를 OECD회원국에게만 적용하되, Non-OECD 회원국의 경우에는 OECD가입요건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함
- 5년마다 동 가입절차의 개정을 검토

□ 가입절차부문

○ 사무국은 신청국가의 국제협력 담당기관의 본부를 방문, 현장실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2004년 개정본에는 동 보고서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해당국 원조의 양적, 질적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였음

- (i) 원조와 관련한 적절한 전략, 정책 및 제도적 체계 수립 여부
- (ii) 원조 공여 노력(0.2%를 초과하는 ODA/GNI 비율 또는 연 1억불이상의 원조)
- (iii)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 여부

○ 1995년 비망록에 있었던 내용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이 2004년 개정본에는 빠져있음

- (i) 신청국의 대사가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 포함되었던 내용중 신청국 원조프로그램 운영과 원칙에 대한 비망록(Memorandum)과 최근년도의 기본 ODA통계치
- (ii) DAC의 가입승인 방법(2개 회원국의 추천과 만장일치로 승인)

□ 회원국 의무사항중 새롭게 추가된 사항

- DAC 지침과 참고문건에 따른 국가원조정책의 수립
- 모든 DAC 전체회의 참석 및 9개 산하기구 중 최소한 1개 기구의 회의 참석

□ 양적 가입 요건

- 1995년 비망록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양적 가입요건을 시사하는 문언이 삭제된 대신 DAC 사무국의 보고서에 신청국 원조의 양적, 질적 평가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

가입을 위해 충족시켜야할 원조량의 최소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현재까지 가입신청을 했던 모든 국가들은 ODA/GNP 비율이 0.2%를 초과하였고, 가까운 미래에 DAC의 평균수준(ODA/GNP비율)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원조량을 대폭확대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DAC 가입 발효 요건

- 2004년 개정본에는 아래와 같은 DAC 가입 발효 요건이 신설
  - (i) OECD 사무총장이 상기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접수하고,
  - (ii) 신청국이 DAC요구수준에 맞는 연간 통계치를 사무국앞 제출

#### 4. 시사점

- 1995년 DAC 가입에 관한 비망록이 DAC회원국들의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DAC가입을 위해 신청국에게 요구되는 원조의 양적 요건은 약화된 반면, DAC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요구수준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향후 신흥원조공여국의 지원비중이 증가할 것에 대비, 이들을 DAC에 적기에, 보다 용이하게 편입함으로써 국제협력노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보임
- 이를 위해 향후 개정에서도 진입장벽은 다소 완화하되 가입이후의 의무사항 강화 또는 Peer Review 등의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국제협력노력 수준을 점검·관리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DAC 가입에 대한 비망록(1995)  
DAC 가입에 대한 비망록(개정본, 2004)

- 자 료 : 1. Participation of OECD Members and Non-members in the DAC (DCD/DAC(2004)2),  
OECD. 2004. 1.  
2. Accession of New Members : Revision of the 1995 Aide-Memoire  
(DCD/DAC(2004)10), OECD. 2004. 2.  
3. Summary Record of the 809th Meeting (DCD/DAC/M(2004)1/PROV), OECD. 2004. 3.  
4. Summary Record of the 810th Meeting (DCD/DAC/M(2004)2/PROV/REV1), OECD. 2004. 3.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mailto:danielee@koreaexim.go.kr)

(붙임 1)

## DAC 가입에 대한 비망록 (1995)

### DAC 가입절차

1.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무국앞 제출하고, 사무국은 제출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당국가의 원조프로그램 담당 책임자와 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 (i) 과거 수년에 걸친 해당국가의 원조활동의 양과 내용
  - (ii)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이행 의사 표시
2. 제출된 정보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한다.
3. 신청국이 가입을 위한 공식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면 신청국은 사무국앞 가입의사를 밝힌다. 사무국은 회원국의 대표들에게 신청국의 가입의사에 대한 반대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국들의 반응결과를 신청 당사국, DAC 의장 및 OECD 총재에게 알린다.
4.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신청국의 대사(Ambassador)는 OECD 총재에게 신청국 정부의 DAC가입의사를 담은 공식서한을 전달하는데, 동 서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i) 신청국 원조프로그램 운영과 원칙에 대한 비망록(Memorandum)
  - (ii) 최근년도의 기본 ODA통계치
5. 이제 가입신청은 차기 DAC회의의 의제로 선정되며, 2개 회원국의 추천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6. 신청국 정부는 회원국으로서의 아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Pledge)를 제출한다.

- (i) DAC 출범이후 도입된 각종 권고사항 및 지침들에 대한 동의
- (ii) 원조 및 혼합신용과 신용조건에 대한 규칙 등의 준수
- (iii) 매년 상세 ODA통계의 제공
- (iv) 원조노력과 원칙을 기술한 연간 비망록 작성·제출
- (v) 위원회와 사무국에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Aid Review 수감

7. 가입을 위해 충족시켜야할 원조량의 최소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현재까지 가입신청을 했던 모든 국가들은 ODA/GNP 비율이 0.2%를 초과하였고, 가까운 미래에 DAC의 평균수준(ODA/GNP비율)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원조량을 대폭확대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붙임 2)

## DAC 가입에 대한 비망록(개정본) (2004)

다음 가입절차는 OECD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 비망록은 5년마다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된다.

### DAC 가입절차

- ①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DAC 가입 의사와 DAC가 가입절차를 진행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DAC 사무국앞으로 전달한다.
- ② 사무국은 동 가입신청서를 분석하고, 신청국가의 개발협력 담당기관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 ③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토론을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보고서는 신청국의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된다.
  - (i) 원조와 관련한 적절한 전략, 정책 및 제도적 체계 수립 여부
  - (ii) 원조 공여 노력(0.2%를 초과하는 ODA/GNI 비율 또는 연 1억불이상의 원조)
  - (iii)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수립 여부
- ④ DAC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국의 대사는 OECD사무총장에게 신청국 정부의 가입의사를 담은 서한과 함께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DAC 출범이후 채택된 권고사항의 즉각적인 이행 및 DAC 지침과 참고서류에 따른 국가원조정책의 수립
  - (ii) 매년 요구되는 ODA통계의 제출

- (iii) 모든 DAC 전체회의 참석 및 9개 산하기구 중 최소한 1개 기구의 회의 참석
- (iv) 원조노력과 정책을 기술한 요약정보를 연간 제출(DCR 보고용)
- (v) Peer Review 수감 및 타회원국에 대한 Peer Review 수행 의무

⑤ 공식적 가입 발효시점 : OECD 사무총장이 상기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접수하고, 신청국이 DAC요구수준에 맞는 연간 통계치를 제출한 시점

ODA 단신 1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 3차 고위급 회담 내용 초안  
ACCRA AGENDA for ACTION(AAA) First Consultative Draft

1. 배경

-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3차 고위급 회담(2008. 9. 2~9. 4)
  - 원조효과성과 관련하여 파리선언 이행 촉진을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으로, 개발기관대표 및 국제금융기구, 개발도상국,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
- Accra Agenda for Action(AAA) :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 될 주요 의제로서 폭 넓은 사전협의(개발도상국 및 관련시민 단체와의 협의, 국제개발 포럼, DAC회원국들간 협의 포함)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
- 본 초안은 2008 파리선언 이행 설문조사, 파리선언 이행 보고서, 파리선언 평가 보고서, 9개의 Roundtable<sup>17)</sup> 토의 등을 통해 작성됨
  - 파리선언이행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수립해야 할 우선순위정책(Priority Actions) 목록이 주된 내용임

2. 파리선언 5대 원칙별 우선순위정책(Priority Actions)

- 수원국 주인의식 강화
  - 수원국은 시민, 시민단체, 의회가 프로젝트 기획·수행·예산집행 등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 마련
  -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transparently implementing conditionality' 을 2010년까지 확정

17) 원조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별도 주제들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9개의 Roundtable(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Results, Mutual Accountability, Civil Society, Fragile Situation, Sector Application, Aid Architecture)이 구성되었으며, 공여국과 수원국이 각 Roundtable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 수원국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공여국은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수행시 명확한 지침을 제공
  - 수원국은 공공재정, 구매시스템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함
  - 또한 수원국의 공공재정, 구매시스템, 안전망(safeguard) 등을 활용하기 위해 공여국과 실무적 수준의 전략 수립
- 공여국의 원조 계획이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수원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역량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해, 2010년 까지 중기예측가능성 (medium-term predictability) 증진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
  - 공여국은 3년 단위의 원조약정의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노력
-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타이드원조 권고’ 이행 강화와 함께 언타이드화 진전
  - 많은 수원국이 타이드원조가 주인의식과 개발역량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동의 하고 있음
- 원조 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해, 2010년까지 ‘Good Practice on Civil Society and Aid Effectiveness’ 공동 성명 마련

□ 원조정책의 조화

- 다자간 원조기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수원국의 포괄적인 개발전략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자금조달이 필요한 것인지, 기존의 수원국 기관을 통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division of labor)과 상호보완(complementarity)을 통해 원조수행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
  - 2010년까지 ‘Good Practice for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 마련

□ 개발성과 중심의 관리

- 성과관리와 시간관리를 위한 공여국·수원국 모두의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성과의 측정, 전달, 공유의 강화
  -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며, 원조의 조화와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고, 원조의 성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
- 상호책임성 강화
  - 상호책임강화체계(mutual accountability mechanism)를 강화
  - 2010년까지 현존하는 국제적 감시체계를 합리화

### 3. 시사점

- 파리선언의 5대원칙을 기준으로 여러 평가 자료 및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본 초안은 상위수준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초안은 2010년까지 파리선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평가로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병목(bottleneck)을 찾아내기 위해 작성됨
- 또한, 2010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들을 명시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 2011년 12월 4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본 초안에서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파리선언의 2010년 목표를 심층 평가할 계획

자 료 : ACCRA AGENDA for ACTION(AAA) First Consultative Draft, DCD/DAC/EFF(2008)3, OECD, 2008. 3.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ODA 단신 2

## New JICA 출범

### 1. New JICA 출범 경위

2006년 2월 24일 「해외경제협력의 올바른 모습」 (자민당 정무조사회)

2006년 2월 28일 「해외경제협력 관련 검토회」 보고서

2006년 5월 26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혁 추진관련 법률」 (행정개혁 추진법) 제정



2006년 11월 8일 임시국회 개정JICA법 제정

2008년 10월 新JICA 발족 예정

### 2. New JICA의 주요 업무

□ 개정 JICA법 제13조(업무의 범위) 1항 업무

- ① 기술협력
- ② 유상자금협력 :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엔차관)를 승계
- ③ 무상자금협력 : 외무성의 무상자금협력업무의 일부를 승계  
- 외교정책상 필요하여 외무성이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
- ④ 국민 등의 협력활동
- ⑤ 해외이주
- ⑥ 재해원조 등 협력(긴급 원조물자의 비축·공여)
- ⑦ 인재양성확보
- ⑧ 1~7호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 ⑨ 부대업무(평가, 홍보)

### 3. New JICA의 조직 및 예산

- 영업조직은 국별기준으로 재편될 예정(One Window for One Country)
  - 신JICA 영업조직은 7개의 국별 담당 부서, 6개의 분야별 담당 부서로 개편될 예정이며 분야별 담당부서는 점차 축소시킬 예정
    - 향후 유·무상 원조사업이 국별 담당 부서 내로 통합되어 추진
- 인사, 총무 등 관리부문은 통합
  - 양 기관의 인사·승진·급여는 통합할 예정이나 예산 및 회계는 유·무상 별도로 운영
-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Operational Budget)과 행정비용인 경비 예산(Administrative Budget)으로 구분되며, 원활한 유상사업 진행을 위해 무상자금인 T/A자금이 유상예산에 포함

#### 신 JICA 예산체계

Administrative Budget ⇒	통합 운영		
	For Loans	For T/A	For Grants
Operational Budget ⇒	<유상예산>		<무상예산>

### 4. New JICA의 정부관리 체계

-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이 JBIC을 공동관리하는 현재 체제가 신 JICA 출범 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대외창구역할을 하는 외무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 단,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성의 영향력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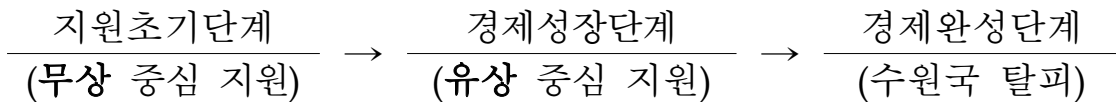
## 5. 시사점

### □ 국제적 영향력 확대

- New JICA는 지원규모면에서 World Bank 다음이 되며, 양자간 원조기관 중에서는 세계 최대의 원조기관이 될 예정

- 국제적 위상 제고에 걸맞게 향후 국제협력관련 각종 국제 세미나, 토론회, OECD/DAC 회의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유무상원조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수원국의 개발초기단계에서 경제완성단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통합지원체제가 마련됨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mailto:ktb@koreaexim.go.kr)

박 회 갑, [hkpark@koreaexim.go.kr](mailto:hkpark@koreaexim.go.kr)

정 리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mailto:danie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1

## 2007년 ODA 통계(잠정치)의 주요 내용

### 1.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07년 DAC 회원국의 ODA 잠정치 규모(순지출기준)는 총 1,037억 달러로 전년(1,044억 달러)대비 8.4% 감소(실질가치 기준)
  - 예견되었던 부채탕감(Debt Relief) 감소(2006년 189억 달러 → 2007년 87억 달러)가 ODA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
    - 2005~2006년 ODA의 예외적인 증가를 주도했던 파리클럽의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탕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ODA 규모 감소
    - 부채탕감을 제외하면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전년대비 2.4% 증가
  - ODA/GNI 비율은 0.28%로 전년대비 0.03% 포인트 감소

#### 주요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단위: 억 달러, 순지출·명목가치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35	0.18	218	0.16
일 본	112	0.25	77	0.17
E U (15개국)	590	0.43	621	0.40
영 국	125	0.51	99	0.36
프 랑 스	106	0.47	99	0.39
독 일	104	0.36	123	0.37
네 덜 란 드	55	0.81	62	0.81
스 웨 덴	40	1.02	43	0.93
스 페 인	38	0.32	57	0.41
DAC 전체	1,044	0.31	1,037	0.28

- 2007년 최대 공여국(순지출기준)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순이며, UN이 제시한 목표 ODA/GNI 비율(0.7%)을 달성한 공여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등 총 5개국임
  
- 미국의 2007년 ODA는 218억 달러로 전년대비 9.9% 감소(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18%에서 0.16%로 감소
  - 이는 부채탕감액 감소와 이라크에 대한 ODA 감소에 기인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45억 달러) 및 최빈국(48억 달러)에 대한 지원은 증가했음
  - HIV/AIDS에 대한 지원이 26.1% 증가하여 3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프가니스탄(16억 달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25.5% 감소한 37억 달러를 기록
  
- 일본의 2007년 ODA는 77억 달러로 전년대비 30.1% 감소(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25%에서 0.17%로 감소
  - 2005~2006년 일시적으로 ODA를 끌어 올렸던 부채탕감이 2007년에 줄어들었고, 다자간기구에 대한 출연이 감소하면서 ODA 지원액이 크게 감소
  - 일본의 ODA(순지출 기준)는 2005~2006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EU DAC 회원국(15개국)의 2007년 ODA는 621억 달러로 전년대비 5.8% 감소 (실질가치 기준<sup>18)</sup>, ODA/GNI 비율은 0.43%에서 0.40%로 감소
  - ODA 감소는 부채탕감의 감소에 따름. 부채탕감을 제외하고 ODA는 8.8% 증가했음
  
- 주요 공여국들이 201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ODA 증액 목표(2004년 기준 1,300억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ODA 증액이 필요함. 많은 공여국들이 ODA 예산증액을 계획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380억 달러(2007년 기준)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18) 2007년 EU DAC 회원국(15개국)의 명목가치 기준 ODA는 621억 달러이며, 실질가치 기준 ODA는 556억 달러임.

## 2. 우리나라 ODA 지원실적

□ 2007년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순지출기준)는 총 U\$671.76백만 으  
로 전년(U\$455.25백만)대비 47.56% 증가

○ 다자간 원조의 대폭증가(전년대비 U\$130.48백만 증가)가 주 요인

- '07년 중 IDA에 대한 출자·출연(U\$82.33백만)이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인

○ 양자간 원조도 전년대비 22.88% 증가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27.40% 증가한 U\$329.90백만 기록함. 그 중, 기술협  
력(Technical cooperation)은 U\$136.29백만으로 41.31%를 차지했으며, 최근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술협력(U\$ 백만): 53.83('04)→80.16('05)→116.78('06)→136.29('07)

- 유상원조(EDCF)는 전년대비 12.87% 증가한 U\$132.19백만 기록함. 양자  
간 원조 중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31.14%에서 28.61%로 감  
소. 그러나 '07년 약정(승인)액은 U\$584.20백만으로 전년(U\$359.22백만)  
대비 62.63% 증가하여, 향후 EDCF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1> 2007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현황

(단위: U\$백만, 순지출기준)

구 성 항 목	2006년	2007년	증감율(%)	비중(%)
ODA (A+B)	455.25	671.76	47.56	100
양자간 ODA (A)	376.06	462.09	22.88	68.79
무상원조	258.95	329.90	27.40	양자중: 71.39
유상원조	117.11	132.19	12.87	양자중: 28.61
다자간 ODA (B)	79.19	209.67	164.77	31.21
ODA/GNI(%)	0.051	0.069	0.018p	-
ODA(총지출)	513.03	706.73	37.76	-



## □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29.62% 증가한 U\$119.39백만을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25.84%를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32.75% 증가한 U\$51.57백만을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11.16%를 차지
-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양자간 원조 중 10.35%를 차지하였으며, KOICA(85.3%)와 국방부(14.6%)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 '06년 최대 수원국이었던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U\$9.26백만 감소한 U\$47.83백만을 기록.

## □ 총지출기준 ODA 지원규모

- 총지출기준 ODA 지원규모는 U\$706.73백만으로 전년(U\$513.03백만)대비 37.76% 증가

## □ ODA/GNI 비율

- ODA/GNI 비율은 0.069%로 전년(0.051%)대비 0.018% 포인트 증가

붙임 :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기준)

자 료 : 'Debt Relief is down: Other ODA rises slightly' (OECD/DAC 보도자료), 2008. 4.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붙임)

2007년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 가 명	2006년도		2007년도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3,532	0.18	21,753	0.16
독 일	10,435	0.36	12,267	0.37
프 랑 스	10,601	0.47	9,940	0.39
영 국	12,459	0.51	9,921	0.36
일 본	11,187	0.25	7,691	0.17
네 델 란 드	5,452	0.81	6,215	0.81
스 페 인	3,814	0.32	5,744	0.41
스 웨 덴	3,955	1.02	4,334	0.93
이 탈 리 아	3,641	0.20	3,929	0.19
캐 나 다	3,684	0.29	3,922	0.28
노 르 웨 이	2,954	0.89	3,727	0.95
덴 마 크	2,236	0.80	2,563	0.81
호 주	2,123	0.30	2,471	0.30
벨 기 에	1,978	0.50	1,953	0.43
오스트리아	1,498	0.47	1,798	0.49
스 위 스	1,646	0.39	1,680	0.37
아 일 랜 드	1,022	0.54	1,190	0.54
핀 란 드	834	0.40	973	0.40
그 리 스	424	0.17	501	0.16
포 르 투 갈	396	0.21	403	0.19
룩셈부르크	291	0.89	365	0.90
뉴 질 랜드	259	0.27	315	0.27
<b>DAC 평균</b>	<b>4,746</b>	<b>0.31</b>	<b>4,712</b>	<b>0.28</b>
<b>우 리 나 라</b>	<b>455</b>	<b>0.05</b>	<b>672</b>	<b>0.07</b>

ODA 자료 2

##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와 현황

### I. 독일 ODA 추진체계의 현황

#### 1. 독일 ODA추진 정부 조직 체계와 배경

- 독일연방공화국은 1952년도에 2차 대전후 처음으로 UN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시작하였고 특히 50년대 말에 독일연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남북정책(Nord-Süd-Politik)을 추진하면서, 개발원조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음
- 2차대전 이후 주로 미국의 원조로 경제재건에 성공한 독일은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대내외여론에 따라 1950년대 중반부터 ODA를 시작
- 초기에는 15개 내외의 정부부처가 개발원조정책을 수행하였으나 공적 개발원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연방정부는 1961년도에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하여 개발원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전담토록 하였음
- 연방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을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외무부가 아니라, BMZ를 신설하여 전담 주관토록 한 데에는, 동-서 냉전시기에 동독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외무부(AA, Auswärtigen Amtes)가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할 경우 대내외 갈등의 소지가 있어 독립부처로 하여금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OD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
- BMZ 설립 초기에는 원조정책 집행기구간 권한과 직무범위 충돌문제 해결이 주요업무의 하나로, BMZ가 개발원조정책을 전담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1964년 2월 23일자로 연방수상령으로 입법화되었으나, 실제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은 1972년도부터임

- BMZ는 독일 원조정책의 원칙과 시행지침을 입안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전세계의 빈곤을 반감시킨다는 UN Millennium Development Plan 목표에 맞추어 Program of Action 2015라는 연방정부 부처간 행동계획을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음
  
- BMZ 산하 원조기구: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부처에서 독립된 별도의 산하 집행기구를 다수 두고 있음
  - 독일개발서비스(DED,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 German Development Service)
  - 독일투자개발공사(DEG, Deutsche Investitions und Entwicklungsgesellschaft -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 독일기술협력공사(GTZ,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 KfW개발은행(KfW Entwicklungsbank - KfW Development Bank)
  - 국제인력개발(InWent -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 국제이주개발센터(CIM, Centrum für internationale Migration und Entwicklung - Centre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 따라서 독일의 대외원조는 **BMZ가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대부분을 맡고 있으며, 소규모 원조 및 긴급식량원조만이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공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독일의 대외 ODA 업무는 연방예산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는 매년 독일 개발원조에 대한 한도(채무구제 한도 포함)를 연방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음
    - 예산 제23조: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해당 예산으로 유·무상 금융지원, 기술원조, 교육·훈련 등 양자간 개발원조에 대한 예산
    - 예산 23조 이외의 개발원조 예산: 연방외무부(AA)가 관장하는 문화교류·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예산 및 다자간원조에 따른 국제기구앞 분담금 등에 대한 예산

## 2. ODA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기구

### 가. 연방의회 및 개발정책 관련 위원회

#### □ 독일 연방의회는 수시로 개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 개발정책 원칙, 원조 관련 개별주제 및 지역 관련 원내 의회토론이나 경제협력개발위원회, 외무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의 토론에서 개발정책 취급
- 개발정책 토의는 통상 연방정부의 개발정책관련 보고서, 현 정책 상황, 국제회의, 의회내 발의안 등의 의제를 다루며, 매년 가을 연방정부의 예산안 제출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함

#### □ 경제협력개발위원회

- 경제협력개발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발의안을 다시 국회로 환송
- 개발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제 15회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
  - 국제 파산법, 금융위기 예방정책 및 금융제도 안정성 강화
  - 지속가능한 금융제도 및 소액대출을 통한 빈곤완화
  - 아프가니스탄 재건
  - 개발협력을 위한 독일 대중 매체의 역할 등
- 경제협력개발위원회는 2005년말 이후 총 22명의 의원으로 구성

#### □ 예산위원회

- 예산과 관련된 모든 연방의회의 안건을 준비, 이를 위해 다른 타 전문 위원회로부터 (개발정책분야에서는 경제협력 개발 위원회로부터) 문서로 의견을 접수
  - 예산 위원회는 특히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조정하고 연방의회에 상정하는 작업을 담당하는데 예산 위원회의 조정이 경제협력부의 예산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외무위원회**

- 외교정책의 범주에서 개발정책 관련 주제를 다루며, 특히 최근 인권 및 인도주의 원조 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적 차원에서의 원조문제를 취급

**나. 주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독일의 각 주정부는 자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1988년 주정부간 합의로 중점 협력분야를 다음과 같이 규정

- 현지 및 독일 전문가의 교육과 재교육
- 인적 지원
- 교육제도의 협력 (직업교육 포함)
- 학문적 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
- 기술협력 및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기술발달과 이전
- 환경과 자원보호
- 의료체계의 지원
- 문화협력

주정부의 총 지원금액은 독일 전체 ODA의 **10%** 정도를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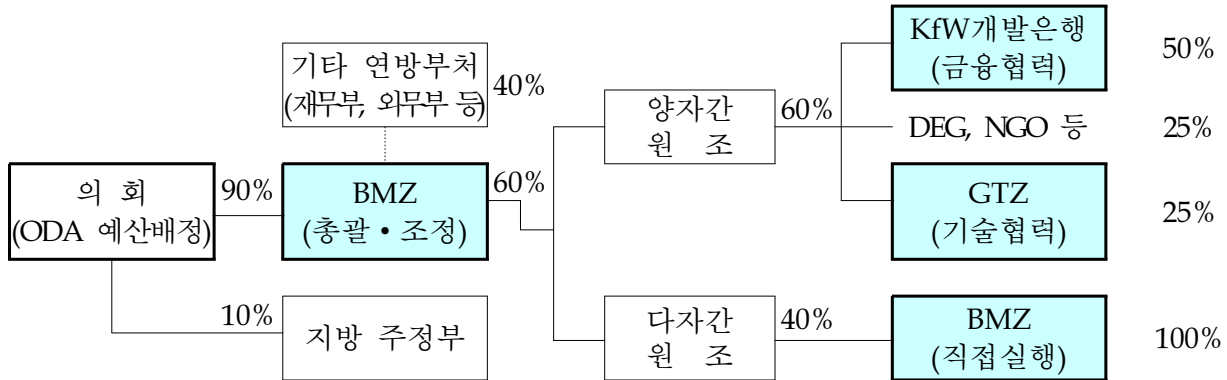
**II. 공적개발원조(ODA) 실행체계**

**1. BMZ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운용체제**

BMZ는 독일 ODA의 양자간 원조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며, 다자간 원조도 직접 관장

- BMZ는 원조실행을 위한 산하기관으로 금융협력을 담당하는 KfW개발은행과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GTZ를 운영
- 일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Länder)도 독자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고 있으나 **BMZ가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

### BMZ 조직도 및 ODA재원현황



□ 독일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에 이은 세계 5위의 원조공여국이며, 재정적자로 인한 연방정부 예산의 삭감속에서도 **BMZ에 대한 ODA예산은 지속 증가**

- 2008 BMZ의 원조예산은 51억 유로로 전년비 14.3%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6년에 ODA/GNI 비율이 0.36%인 대외원조규모를 2010년까지 0.51%, 2015년에는 0.7%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 EU 회원국(Old EU Member States)간 합의에 부응하기 위함
- 최근 독일 ODA의 규모증가는 차관에 대한 채무구제(Debt Cancellation)의 영향

###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이<sup>19)</sup>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기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양자간 원조	4,060	3,823	7,447	7,034
증 여	4,737	4,513	8,248	7,576
차 관	-678	-690	-801	-542
다자간 원조	2,724	3,712	2,635	3,401
<b>총 ODA(Net)</b>	<b>6,784</b>	<b>7,534</b>	<b>10,082</b>	<b>10,435</b>
<b>ODA/GNI(%)</b>	<b>0.28%</b>	<b>0.28%</b>	<b>0.36%</b>	<b>0.36%</b>

19) BMZ와 기타 연방부처 및 지방 주정부의 ODA를 모두 포함한 독일 전체의 ODA 규모임

## 2. 양자간 원조

- 독일의 양자간 원조는 유상원조 15%, 무상원조 85%로 구성
  - 공적개발원조 실행기관 별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하기 보다는 크게 금융협력과 기술협력으로 나누어 실시
  - 금융협력은 대출, 증여(Grant), 대출과 증여의 혼합(Mixed Finance, Composite Finance)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협력은 대부분 무상원조
  - 유상원조는 KfW개발은행의 차관제공으로 이루어지며 무상원조 중에서는 GTZ의 기술협력이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 다자간 원조와 달리 양자간 원조는 공적개발원조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적으로 BMZ에 의존하지 않으며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 KfW개발은행의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과 BMZ 예산을 결합하여 Mixed Finance, Composite Finance 등의 혼합신용제도를 지원
  - GTZ 역시 BMZ 및 타 공적개발원조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기술협력 사업관련 창출된 잉여 수익을 다시 GTZ의 독자적인 기술협력 사업에 투입

## 3. 다자간 원조

- 다자간 원조의 경우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다자간 원조에서 지원규모 조정을 통해 국제기구 등 다자간 원조 실행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 독일 의회 예산위원회는 BMZ 예산의 30%~40%를 다자간 원조에 배분함으로써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의 구성비는 대체로 2 : 1 수준
- 유럽공동체(EU) 및 유럽화폐통합(EMU) 등 유럽 경제의 구심점으로서 독일의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EU 국가중 최대
  - EU관련 기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원조의 구매를 EU 역내로 제한하게 되어 타이드 효과를 일정부분 얻을 수 있기 때문



### 금융협력(FZ, Finanzielle Zusammenarbeit)

- “금융협력(FZ)”은 독일 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양허성 조건의 금융 및 무상원조를 포함, **BMZ예산**으로 이루어지며, 심사, 집행, 사후관리 등 실무는 **KfW개발은행**이 맡고 있음
- 금융 유상지원 조건은 수혜국의 경제조건에 따라 다음 3가지로 구분
  - 저개발도상국(LDC) : 무상원조(연구개발, 타당성조사 등 기술협력(TZ, Technische Zusammenarbeit) 및 프로젝트 담당자 교육·훈련 등)
    - 프로젝트(또는 프로그램) 목적이 수원국의 빈곤추방, 중소기업 육성,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간접자본 투자, 환경보호 등일 경우에는 LDC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상원조가 가능
  - 세계은행이 정한 IDA지원조건 해당 개발도상국 : 이자율 0.75%, 상환기간 최장 40년, 거치기간 최장 10년
  - 기타 개발도상국 : 이자율 2.0%, 상환기간 최장 30년, 거치기간 최장 10년
- 개발도상국 중 신용상태가 양호한 국가에 대해서는 연방예산과 KfW 자체자금을 혼합신용으로 유상 지원

## III. ODA관련 주요 기관

### 1. BMZ(연방경제협력개발부)

- 독일 개발원조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전담하는 한편 타 정부 부처와 개발원조 관련 정책을 조정
  - 개발원조의 전반적인 틀/framework) 정립
  - 양자간 원조 및 다자간 원조의 전략 수립
  - NGO의 개발원조 사업 지원
  - 개발원조 사업의 감독(monitring) 및 평가(evaluation)

□ 업무

- 제1국은 주로 일반관리와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에 중점을 둠
- 제2국은 아시아, 중남미 및 유럽과의 개발협력, 평화 유지, 민주화 및 유엔 관련 업무에 중점
- 제3국은 다국적 협력, 유럽연합의 개발정책 및 지원 조정 담당

□ 예산관리

- BMZ의 예산은 양자간 원조 실행기관인 **KfW개발은행, GTZ, NGO들에 대한 출연금** 뿐만 아니라 **다자간 원조 출연금**을 포함
- BMZ가 공적개발원조(ODA) 뿐만 아니라 **공적원조(OA)**를 포함하기 때문에 BMZ의 예산 증가가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독일 정부는 BMZ의 개발원조(ODA 및 OA) 예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직·간접 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부처 중 교통·건설·주택부 및 일반금융관리청에 이어 **BMZ 개발원조예산이 독일 연방에서 세번째로 비중이 높은 투자예산**<sup>20)</sup>
  - 특히 유상원조(financial cooperation loan)는 상환금의 대출재원 순환(self-financing)을 통해 개발원조 사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평가

□ 평가 업무

- BMZ는 기본적으로 OECD/DAC의 Principles for Development Evaluation 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independence, creditability, participation, transparency, use
- 평가담당부서는 주로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GTZ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ODA 공여 기관에 연 1~2회 출장 감사 실시

20)) 1999년 IFO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BMZ의 Developmental Budget의 매 1억 유로는 3억 유로의 수출유발, 10억 유로의 GNP 창출 그리고 2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

## 2. KfW Entwicklungsbank(KfW 개발은행)

### □ 개요

- KfW개발은행은 독일의 대표적인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실행기관으로서 사회·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발원조(OA), 민간개발 금융을 제공<sup>21)</sup>
  - 특히, 동 은행이 수행하는 ODA는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협력(FZ)에 해당하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모두 제공
- 지역별 본부 아래 금융, 에너지, 운송, 보건, 수처리,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Pool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지역별 팀과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분업

### □ 업무

- KfW개발은행의 금융협력은 재원별로는 **BMZ가 소요 재원 전액을 부담하는 원조차관과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대표적
  - Mixed Finance, Composite Finance, Loans at Reduced Interest Rates는 BMZ 개발원조 예산에 KfW 자체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혼합
  - 이외에도 KfW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 앞 금융협력의 전문성을 토대로 프랑스의 개발원조청, EU의 유럽개발금융기관(EDFI) 등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사업을 수탁

## 3. GTZ(기술협력공사)

### □ 업무

- GTZ는 KfW개발은행과 더불어 BMZ의 대표적인 양자간 원조 실행기관으로서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해 지원
  - 개발원조 사업의 준비, 실행, 평가 단계별 기술자문
  - 전문 인력의 파견
  - 교육훈련의 설계 및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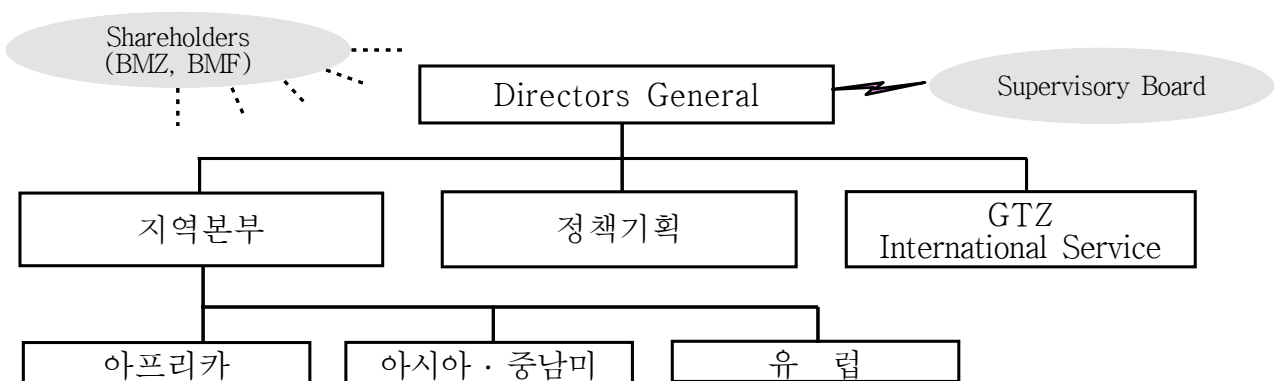
21) 독립된 기관은 아니며, 공적금융기관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부흥금융금고)내 본부형태로 존치

- 즉 GTZ의 기술협력은 특정 개발 프로젝트의 설계(design), 사업타당성 조사와 같은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환경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제도적 기반조성(frame reform)을 의미
- 또한 긴급구조(emergency aid), 난민수용(refugee program) 등 인도주의적 목적의 단기적 구호활동도 담당
- GTZ는 주로 BMZ로부터 재원 및 사업범위를 위임받아 공적개발원조를 실행하지만(2002년 전체 지원의 74.5%), BMZ 이외의 타 정부부처(7.3%), EU 등 국제기구로부터(18.2%)<sup>22)</sup>도 기술협력 사업을 의뢰받아 수행
- GTZ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이익(public benefit)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개발사업비에서 실소요금액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자체 개발원조 사업에 투입

□ 구성

-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130여개 국가에서 활동
  - 65개의 해외 거점에 약 1,30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8,500여 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하여 **분권화**(decentralization)된 의사결정 구조
  - GTZ 본부에는 약 1,000여명만이 근무
- GTZ의 업무를 감독하는 Supervisory Board는 **의회(4), 외무부(1), 재무부(1), 경제부(1), 경제협력개발부(1)** 등 주주가 임명하는 8인과 GTZ 직원(6), 산업계 대표(2) 등 선출직 8인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GTZ 조직도



22) GTZ는 EU, UN 등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로부터 위임받은(commissioned) 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해 GTZ International Service라는 별도 내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BMZ-GTZ의 협약에 따르면 GTZ International Service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평가 업무

- GTZ 역시 OECD/DAC의 평가기준에 의거 achievement, significance, relevance, efficiency 및 results 등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며, 여타 집행부서와는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직접 이사회에 보고
- 평가업무는 크게 **Self-evaluation**과 **External evaluation**으로 나누어짐
  - Self-evaluation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프로젝트 추진 당사자와의 인터뷰 내용 및 해당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Project/programme progress review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 External evaluation은 GTZ의 별도 평가팀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써, 독일 정부의 경제협력 방침에 부합하는지, 프로젝트 당초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
- 2005년부터 GTZ는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Final evaluation 및 Ex-post evaluation을 수행하며, 특히 Ex-post evaluation은 수행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종료후 2~3년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

자 료 : OECD Peer Report ; Germany 2006

BMZ 웹사이트([www.bmz.de](http://www.bmz.de))

GTZ 웹사이트([www.gtz.de](http://www.gtz.de))

KfW개발은행 웹사이트([www.kfw-entwicklungsbank.de](http://www.kfw-entwicklungsbank.de)) 등

작 성 : 이 광 인, [kilee@koreaexim.go.kr](mailto:kilee@koreaexim.go.kr)

정 리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한국수출입은행

EDCF 소식

2008년 1/4분기 EDCF 소식

1. 2008년 1/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방글라데시 해안통신국 현대화 및 해상조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 통신공사)
- 총 사업비용 : 20.2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4.2백만 달러
- 사업범위 : Mongla와 Chilimpur 소재 해안통신국 현대화, Dhaka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해상조난안전시스템 장비구매 등
- 사업개요
  -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부합하는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해상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방글라데시 정부가 차관신청서 제출
  - 본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해역내에서는 모든 선박과의 통신이 24시간 가능하게 되며 선박 운항관리, 안전운항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고 대처로 해상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외국선박의 방글라데시 항구이용도 제고를 통해 대외교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네팔 정부 (네팔 전력청)
- 총 사업비용 : 99.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45.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네팔 북서부의 Darchula 지역에 위치한 차멜리야 강에 30MW(15MWx2) 수력발전소 및 131km 송전선 건설에 필요한 기계 및 전기 부문 기자재 공급·설치 등

○ 사업 개요

- 네팔 수력발전 개발계획상 최우선사업으로, 2006년 3월 네팔 정부가 차관 신청서 제출
- 네팔의 심각한 전력공급난을 완화하고 낙후된 네팔 북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또한, 네팔에서 가장 낙후된 미개발지역 중 하나인 Darchula 지역의 산업 발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AJK & NWFP 주의 인프라 복구지원 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파키스탄 정부 (지진피해복구청)

○ 총 사업비용 : 25.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0.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파키스탄 지진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건설중장비 및 부대 용역 공급(굴삭기, 불도저 등 총 137대의 건설중장비 공급 및 감리 등)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파키스탄 지진(2005. 10) 피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굴삭기, 덤프 트럭 등 총 137대의 건설 중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임
- 건설 중장비 공급을 통해 파키스탄 지진피해 잔해들을 제거해 피해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타 도로·교량·학교 건설 등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복구작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디지털 방송 인프라 확충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Vietnam Multimedia Corporation(국영방송국))

○ 총 사업비용 : 3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멀티미디어 센터 구축에 필요한 방송 기자재 및 관련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과 컨설팅 서비스 등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사 업 개 요

-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Program for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of Vietnam to 2010 and the Orientations up to 2020)의 일환인 멀티미디어 센터 구축을 위해 동 센터에 필요한 방송 기자재 공급 및 시스템 등을 구입하고 교육훈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악, 도서지역 주민에게 지상파, 인터넷, 위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농간 빈곤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노동부 및 5개성)
- 총 사업비용 : 5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5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5개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이를 위한 교과과정,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 사 업 개 요
  -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노동인력 중 직업훈련 수료 인력 비중을 2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본 사업 지원을 요청
  -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창출, 산업발전, 국가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베트남 최초로 5개 주요거점에 최신 직업기술대학을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베트남 직업기술대학의 표준을 제시하고, 베트남 직업훈련 체제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정부 (공공사업교통부)
- 총 사업비용 : 49.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7.2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제방축조 및 보강(12.2km), 강변도로 건설(2.7km), 강변공원 조성(16ha), 강변선착장 개보수 등



○ 사업 개요

- 메콩강변의 토양 침식으로 인해 토지 유실이 매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범람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라오스 정부는 메콩강 제방축조를 통한 홍수예방 및 국토관리를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2006년 12월 KOICA의 사업타당성조사(F/S)를 토대로 2007년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됨
- 수도 비엔티안시 중심부의 메콩강변 제방축조 및 보강을 통해 홍수피해의 최소화 및 국토의 유실 방지 가능. 또한, 강변도로 건설과 강변공원 조성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시민의 복지증진이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빈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온두라스 Atlantida 병원건립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온두라스 정부 (온두라스 보건부)
- 총 사업비용 : 30.3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9.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기존의 지역병원인 Ceiba 병원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면적 7,000m<sup>2</sup>, 250병상 규모의 병원 신축 및 병원기자재 구매
- 사업개요
  - 온두라스정부가 추진 중인 「빈곤감축계획」 및 「2002-06 중기보건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아틀란티다(Atlantida)州에 신규 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수혜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8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및 2006년 10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본 사업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 및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술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3차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기대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원병상 및 응급의료서비스 확대가 예상됨

##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8. 3. 31 현재)

###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5년	3,094	1,643	17,586
2006년	3,534	1,361	19,238
2007년	5,853	1,553	21,169
2008년(3월말)	593	177	21,162

\* 2008. 3. 31자 환율 (₩1001.81/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3개국 174개 사업, 3조 3,100억 원 ('08 : 2개국 2개 사업, 593억 원)
- 집행 : 38개국 136개 사업, 1조 7,909억 원 ('08 : 12개국 20개 사업, 177억 원)

###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8. 3)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22,138	66.9%	12,199	68.1%
유 럽	3,227	9.8%	2,453	13.7%
아 프 리 카	4,163	12.6%	1,882	10.5%
중 남 미	2,346	7.1%	820	4.6%
중 동	1,072	3.2%	474	2.6%
대 양 주	154	0.5%	82	0.5%
합 계	33,100	100%	17,909	1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9,433	28.5%	4,878	27.3%
통 신	4,182	12.6%	3,198	17.9%
에 너 지	3,362	10.2%	2,181	12.2%
수자원, 위생	4,817	14.6%	1,957	10.9%
환 경 보 호	221	0.7%	148	0.8%
보 건	2,955	8.9%	1,791	10.0%
교 육	3,164	9.6%	1,370	7.7%
공 공 행 정	2,347	7.1%	1,062	5.9%
농 수 임	1,696	5.1%	658	3.7%
기 타	925	2.8%	668	3.7%
<b>합 계</b>	<b>33,100</b>	<b>100%</b>	<b>17,909</b>	<b>100%</b>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mailto:miboahn@koreaexim.go.kr)